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38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2
※ 참고자료	8
1. 관광종사원 제도 및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1. 30.

다. 회 부 일: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생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⑨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⑨ (생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③ (생략)	제40조(자격취소 등)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한 경우 제86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한 자 ②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

1)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⑤ (생략)

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등 관광 자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제고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일부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관광안내 업무 수행 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취소,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 서비스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사실 왜곡’,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 등은 불확정개념으로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 해석 및 집행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우며,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보임.

특히,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및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그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율대상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제재요건인 ‘역사 왜곡’ 및 ‘편향된 설명’은 학술적·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② 주관적 영역인 ‘해설 내용’을 제재 사유로 편입하는 것은 결격사유, 명의 대여 등 객관적 요건을 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③ 국가전문자격에 ‘견해 표명’을 자격 박탈 사유로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의미가 불분명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관광종사원 제도 및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 관광종사원 개요

- (목적)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 증진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시행령 제36조 (자격 기준), 시행규칙 제44조~제50조
- (종류)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관광종사원 현황

구분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서비스 내용		관광안내 인솔 해설	관광안내 인솔 해설	호텔 총괄관리	객실관리 경영	접객 객실정리
자격자 및 활동 인원 (’25년말 현재)		39,109명	91,203명	354명	3,576명	26,171명
자 격 시 험	시험방법	필기-외국어 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면접
	필기시험 과목(배점)	국사,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관광법규 호텔실무
	면제유형	필기시험 일부면제	필기시험 전부면제	필기시험 전부면제	필기시험 전부면제	필기시험 전부면제
	면접	외국어 면접	면접	외국어 면접 호텔실무상식	외국어 면접 호텔실무상식	면접
	시험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제도 시행시작 연도		1962년	1976년	1962년	1962년	1962년
유자격자 의무 고용		○	×	×	×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현황

(2025년 말 기준)

연도	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25	1,009	560	161	191	19	6	27	6	3	15	9	9	3
'24	1,114	596	176	245	6	6	15	8	3	19	19	11	10
'23	770	400	149	148	6	4	13	3	2	14	20	6	5
'22	790	370	151	192	2	3	5	6	-	14	20	18	9
'21	881	456	134	194	6	3	9	6	1	17	39	10	6
'20	1,327	617	204	343	14	-	7	16	2	46	61	13	4
'19	1,428	678	269	335	9	2	12	7	1	41	56	13	5
'18	1,251	512	208	416	7	4	6	10	-	42	30	13	3
'17	1,610	529	186	739	7	1	4	8	-	83	22	28	3
'16	2,145	464	153	1,418	6	3	3	6	2	66	5	15	4
'15	2,522	344	137	1,963	7	3	4	5	-	35	5	17	2
'62-'14	24,262	5,815	10,193	7,650	171	112	99	111	-	29	20	62	-
합계	39,109	11,341	12,121	13,834	260	147	204	192	14	421	306	215	54